

전북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-76호

24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추가 임용시험(노동·수의 7급, 수의연구사) 계획 공고

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추가 임용시험(노동·수의 7급, 수의연구사)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1월 8일

전북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

1 관련근거

- 지방공무원법(법률 제20377호, 2024. 3. 19.)
- 지방공무원 임용령(대통령령 제34609호, 2024. 6. 27.)
-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(행정안전부 예규 제288호, 2024. 6. 27.)
-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(전북특별자치도 규칙 제3241호, 2024. 5. 17.)

2 선발예정인원

-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추가 임용시험(노동·수의 7급, 수의연구사)

직 급	직 렌	직 류	선발 예정 인원	임용기관	시험과목
계			25		
7급	행정	노동	1	남원 1	서류전형(1차)+면접시험(2차) ⇒ 필기시험 없음
	수의	수의	18	전북도 13, 익산 2, 정읍 1, 남원 2	
연구사	수의연구	수의	6	전북도 6	

3 시험일정 및 시험과목

시험명	원서접수 기 간	원서접수 취소기간	시험방법	시험장소 공고일	시험일	합격자 발표일
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추가 임용시험 (경력경쟁)	11.25. ~ 11.29. (5일간)	—	서류전형 (1차)	—	12.6.	12.10.
			면접시험 (2차)	12.10.	12.17.	12.20.

4 시험방법

- ① 서류전형(1차) :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
- ② 면접시험(2차) : 서류전형(1차)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,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

5 응시자격 요건

- ① 응시결격사유 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및 제66조(정년)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거나 응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(정년)

-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

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

-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.
 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 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 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 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"비위면직자등"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이라 한다)

② 응시연령

직 급	응시연령(해당 생년월일)
7급 및 연구사	18세 이상(2006. 12. 31. 이전 출생자)

③ 학력 및 자격증·면허증 등 제한 (기준일 :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)

직 급	직 렌	직 류	자격증·면허증 제한
7급	행정	노동	공인노무사
	수의	수의	수의사
연구사	수의연구	수의	수의사

- ④ 거주지 제한 : '24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(노동·수의 7급, 수의연구사) 추가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해당 직류·직급의 거주지 제한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

직 급	직 렌	직 류	임용기관	거주지 제한
7급	행정	노동	선발 임용기관	거주지 제한 없음(전국) ※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(외국인이 아닌 자)
	수의	수의		
연구사	수의연구	수의		

6 응시원서 접수

□ 접수개요

- 대 상 : 노동 7급, 수의 7급, 수의연구사
- 접수 기간 : 2024. 11. 25.(월) ~ 11. 29.(금) (09:00~18:00) ※ 점심시간은 제외(12:00~13:00)
- 응시원서 제출방법 : 방문접수 또는 등기 우편접수 ※ 등기우편 접수자는 사전에 유선 연락 바람

■ 우편접수 시 유의사항

- ▷ 주 소 : (우 54968)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총무과 공무원채용팀(2층)
- ▷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근무시간(18:00)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
- ▷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,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(☎063-280-2266)
- ▷ 응시수수료는 '통상환증서'(우체국에서 구입)를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(현금×)

□ 응시자 제출서류

- 응시원서 1부 (【서식1】, 자필기재)
 - 응시원서에는 임용예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중복접수 할 수 없음
 - 응시수수료 : 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(7,000원)
 - ▶▶▶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농협은행 구입(09:00~17:00)
 - * 대한민국 수입인지 사용불가
 -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나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됨
 - ※ 해당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
- 이력서 1부 (【서식 2】, 워드작성 및 자필서명 또는 인)
- 자기소개서 1부 (【서식 3】, 워드작성 및 자필서명 또는 인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동의서 1부 (【서식 4】, 워드작성 및 자필서명 또는 인)
- 자격·면허증 사본 1부 ※ 원본지참 필수
- (우편접수 시) 신분증 사본 1부

7

기타 사항

- 전북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및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
-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원서 등에 기재착오 및 누락,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시험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에 따라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총무과 공무원채용팀(☎ 063-280-2266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